



## 한 · 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김홍종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 주요 내용

- ▣ 7월 12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양자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

  - 이로써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은 세 번째 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유럽 선진경제권임.
- ▣ EFTA와의 FTA가 타결됨으로써 양자간에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케 되었음.

  - 이와 함께 일정 기준 이상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역외가공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남북합작에 의한 상품생산의 해외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음.
- ▣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對EU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음. 아울러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럽에서 아직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 한 · EFTA FTA는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한 · EFTA FTA가 발효되고 그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과 EU 양 지역에서 한 · EU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1. 한·EFTA FTA협상 타결

- 7월 12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정부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
-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리히텐슈타인(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노르웨이(Kingdom of Norway), 아이슬란드(Republic of Iceland)의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EU에 속하지 않는 선진 유럽국가들로서 1인당 국민소득(GDI)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소득국가들임.
- 한국과 EFTA 양측은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로써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FTA 타결국이 되었음.

### 글상자 1. EFTA의 역사

- 1960년 1월 4일에 스톡홀름 협정에 의해 창설됨. 회원국간 공산품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나중에는 어류 및 가공 농산품의 자유무역을 지향함.
- 1970년대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양자간 FTA를 체결함.
- 1990년대 이후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의 하나임.
- 1994년 1월 1일 이후 스위스를 제외한 EFTA 3국은 EU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을 창설함. 스위스는 EU와 일련의 양자간 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함.
- 2002년 6월부터 스톡홀름 협정을 대체하는 바두즈 협정(Vaduz Convention)을 통해서 회원국 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 자유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함.

### 글상자 2. EFTA 개요(2004년 기준)

- EFTA는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함.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스위스는 의약, 기계류, 시계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임.



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터키,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

- FTA협상 진행 또는 타결국가(5): 캐나다, 이집트, SACU, 한국, 태국
- 협력국가(6): 알바니아, GCC, 세르비아·몬테니그로, 알제리, MERCOSUR, 우크라이나

#### 나. 한·EFTA FTA협상 추진과정

- 2000년 이후 EFTA는 동아시아국가들과 FTA를 공개적으로 추진함.
  - 2000년 6월 취리히 각료회의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기본입장을 정함. 같은 해 12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한국도 2000년 이후 EFTA의 적극적인 FTA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EFTA와의 FTA를 신중히 검토함.
- 2004년 5월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음.
  - 이를 계기로 양측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이 주축이 되어 한·EFTA 공동연구단(Joint EFTA-Korea Study Group)이 결성됨.
- 2004년 10월 공동연구 2차 회의에서 1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 연구보고서가 확정됨.
  - 2004년 8월과 10월 제네바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두 차례의 공동연구회의에서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 연구보고서를 확정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측은 2004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연구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여 한·EFTA FTA의 유효성을 재확인함.

- 2004년 12월 1일 양자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2005년 1월 이래 네 차례의 정부간 협상 끝에 7월에 협상이 타결됨.
  - 2005년 1월 제네바에서 1차 정부간 협상이 시작된 이래 4월(서울), 5월(오슬로)에 이어 7월 4~8일에 걸쳐 서울에서 4차 정부간 협상을 끝으로 모든 쟁점이 타결되었음.
-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6년 7월 1일 한·EFTA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9월 초까지 타결문안에 대한 기술적, 법적 검토작업을 끝마치고 11월경 통상장관회담에서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양측 국가별 국내비준절차가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면 2006년 7월 1일부로 한·EFTA FTA는 발효될 수 있음.

### 3. 주요 협상 결과

#### 가. 상품양허 분야

-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33개 품목 중 99.1%인 1만 41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8,744개 품목을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함. 반면 EFTA는 전 품목 양허율 100%에 농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을 완전철폐함.
  - 이상의 공산품, 수산 및 농산품 양허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표 1. 한국측 상품양허안 총괄표

(단위: 개, %)

	전 품목 (기본농산물 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 철폐(A)	8,744(86.3%)	8,568(91.1%)	110(27.1%)	66(20.4%)
3년 철폐(B1)	388(3.8%)	381(4.1%)	7(1.7%)	-
5년 철폐(B2)	396(3.9%)	294(3.1%)	101(24.9%)	1(0.3%)
7년 철폐(B3)	138(1.4%)	132(1.4%)	6(1.5%)	-
10년 철폐(B4)	123(1.2%)	-	102(25.1%)	21(6.5%)

〈표 1〉 계속

	전 품목 (기본농산물 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관세인하(10~50%)	190(1.9%)	-	-	190(58.8%)
TRQ	1(0.0%)	-	1(0.2%)	-
향후 재검토(R)	61(0.6%)	29(0.3%)	32(7.9%)	-
<b>양허 계</b>	<b>10,041(99.1%)</b>	<b>9,404(100%)</b>	<b>359(88.4%)</b>	<b>278(86.1%)</b>
양허 제외(E)	92(0.9%)	-	47(11.6%)	45(13.9%)
<b>총 계</b>	<b>10,133(100%)</b>	<b>9,404(100%)</b>	<b>406(100%)</b>	<b>323(100%)</b>

자료: 외교통상부 FTA국(2005), 「한·EFTA FTA 상품 양허협상 결과」.

### 1) 공산품 분야

- EFTA 측은 공산품 전 품목 즉시 관세철폐에 동의하였으며, 한국측은 즉시 철폐 91.1%, 5년 이내철폐 98.3%, 최장 이행기간 7년으로 양허함으로써, 양측은 실질적인 시장개방효과를 거둠.
  - 한국측은 9,404개 공산품 품목(임산물 포함)에 대해 100% 양허하였음. 가장 보호의 정도가 높은 7년철폐품목(132개)으로는 목재, 보일러 등 기계류와 부품, 유·무기 화학제품, 차량부품, 일부 화장품과 의약품 등임.
  - 다만 29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따로 관세철폐 일정을 제시하지 않지만 3년 후 재검토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향후 타국에 대해 양허시 EFTA에도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하였음.
  - EFTA측은 양허율 100%에 더하여 FTA 발효 즉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임.
  - 현재 EFTA측 공산품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2.5%(종가세로 환산시),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임. EFTA측의 주요 고관세품목으로는 의류 및 직물, 귀금속제품, 각종 조제식품 등임. 특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높는데 FTA 발효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임.

### 2) 수산물 분야

- EFTA측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수산물 분야에서 한국측은 상당한 정도의 자유화를 용인하되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하게 되었으며, EFTA측은 수산물 전 품목을 무세화하기로 함.

- 한국측은 전체 406개 수산물품목 중 88.4%인 359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고 민감품목인 김, 미역 등 해조류 47개 품목(11.6%)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59개 자유화품목에 대해서도 110개 품목(27.1%)에 대해 즉시 철폐, 101개 품목(24.9%)에 대해 5년 철폐, 102개 품목(25.1%)에 대해 10년 철폐하기로 함. 특히 냉동고등어의 경우 관세할당쿼터(TRQ)를 적용하여 매년 500톤 이상의 수입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향후 재검토품목은 32개(7.9%)임.
- 연어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 6개, 5년 철폐 4개, 10년 철폐 1개이며, 활어류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EFTA측 request를 수용하여 4개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철폐하고 24개 품목에 대해서는 7년내 재검토폰하기로 함.
- 양측은 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수산분야 기술이전, 연수 등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3) 농산물 분야

- 농산물의 경우 가공농산물만 본 협정의 대상으로 하였는바, 한국측은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 10~50%의 관세인하를, EFTA측은 사과, 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해 대폭 양허함.
- 기본농산물의 경우 EFTA는 EU와의 관계로 인하여 본 협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그리하여 스위스의 경우 네 종류의 치즈품목에 대해 쿼터 설정 후 10년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 철폐하기로 함. 노르웨이의 경우는 치즈에 대해 40% 관세감축을 하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말고기에 대해 5년 철폐하기로 함.
- 한국은 가공농산물의 경우 전체 323개 품목 중 86.1%에 해당하는 278개 품목에 대해 양허함. 이 중에서 물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66개 품목(20.4%)에 대해 즉시 철폐, 주류 및 커피 등 21개 품목(6.5%)에 대해서는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기타 190개 품목(58.8%)에 대해 관세감축하기로 함. 인삼제품 등 민감품목의 경우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함.
- EFTA측은 사과와 배를 계절관세(12~4월 관세철폐)로 양허(노르웨이)하거나 in-quota내 관세철폐로 양허(스위스)함. 김치, 소주, 쌀 발효주, 라면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해서 대폭 양허하여 스위스는 김치, 소주 및 쌀 발효주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하기로 함.

## 나.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함.
  - 한국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음.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례 인정도 가능하게 되었음.

## 다. 서비스, 투자 및 기타

- 서비스 양허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안 수준을 반영함.
  - DD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한·EFTA FTA에 의해 시범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향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음.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부분개방이 포함됨.
  - 특히 방송서비스의 경우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서 한국 관련 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함.
  -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관련 규범을 정비하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내용을 더욱 명확히 함.
  - 투자와 관련하여 그동안 1971년에 체결된 스위스와의 일반 투자협정이 있는바, 이번 합의로 EFTA 4개국과의 투자협정이 맺어짐.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이상의 보호조항을 두었으며, 정부조달,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FTA협정을 체결함.

## 4. 한·EFTA FTA 타결의 의의와 향후 전망

- EFTA는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임. EFTA는 한국이 지금까지 맺은 FTA 체결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파트너임.
  - 한국은 2003년 초 칠레와의 FTA협상을 타결한 이래 2004년 말 싱가포르와 FTA협상을 끝내고 올해 EFTA와의 FTA협상을 타결했는데, 유럽에 소재한 EFTA와 FTA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주(칠레)와 아주(싱가포르)에 이어 구주에도 한국의 FTA협상 타결국가가 생겼음.
  - EFTA는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나 싱가포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경제권임. EFTA 4국의 1인당 국내소득(GDI, 2003년 기준)은 3만 8,656달러로서 한국의 1만 2,628달러의 세 배를 능가하고 있음. 이는 칠레(4,562달러)나 싱가포르(2만 798달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최고 수준임.
  - EFTA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EFTA는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 대상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음. 한편 EFTA의 입장에서도 EU를 제외한다면 14개 체결국 중 한국이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대상국임.
-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과 EFTA는 한·EFTA FTA를 통하여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증대할 것임.
  - 양측의 교역은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낮고 산업간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에 따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했을 때 EFTA와의 FTA로 한국의 GDP는 0.02~0.0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후생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억 달러 내외가 될 전망이다.
  - 한·EFTA FTA가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개별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음. 한·EFTA FTA로 인해 기타 수송장비업의 경우 약 1.5%, 가공식품업의 경우 약 0.9%의 생산증가가 예상됨. 반면 기계류의 경우 약 0.2%, 금속업의

경우 0.13%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표 2.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단기	중기
GDP(%)	0.02	0.05
후생수준(%)	0.04	0.06
후생수준(백만 달러)	174	244

주: 단기적 효과는 관세철폐에 따른 정태적 효과(static effect)를 가리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이 주된 원천임. 중기적 효과는 Baldwin(1989, 1992)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으로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데, 증가된 국내총생산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를 고려한 결과임.

- 수출입의 경우 2004년 수출규모의 약 85%에 해당하는 약 6억 달러의 수출증대효과와 2004년 수입규모의 41%에 해당하는 7억 달러의 수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o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가공식품과 기타 수송장비이고 농산물,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에 대한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치즈, 와인 등의 가공농산물과 연어, 냉동고등어 등의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임. 또, 기계류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속제품, 가공식품, 화공 등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한·EFTA FTA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상품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개방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의 완충역할을 도모할 수 있음. 아울러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열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한·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한·EFTA FTA 체결은 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주 의적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럽국가에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한·EFTA FTA는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임.
  - EU는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FTA 체결 대상국 중의 하나임. EU와의 FTA는 다른 거대경제권과 비교하여 산업구조의 보완성이 더 큰 경제권이며, EU의 선진화된 경제 체제는 FTA 체결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그동안 EU는 한국과 EFTA와의 FTA가 어떠한 형태로 체결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개방적 사고와 합리적 접근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갖고 있는 이번 FTA의 형태로 판단해 보면 한·EFTA FTA는 향후 한국이 EU와 FTA를 논의할 때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한·EFTA FTA의 발효이후 예상되던 FTA의 효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EU는 이러한 제반 효과를 근거로 양자간 FTA의 효과를 예측하고 협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